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
: 청소년비행 예방과 청소년회복센터

천 종 호(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Ⅰ.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

1. 우리 사회의 모습

▶ **가정의 해체**

- 가정해체의 급속한 진행 : 한국사회는 경제개발기의 대가족붕괴로 핵가족화 되었다가, IMF 사태가 터진 1997년 무렵부터 핵가족마저 붕괴됨
- '1인가족'의 비율이 급증
- '구시대의 꿈을 깨지 못하는 아버지들'
- 어머니의 '희생엔진'과 '개성엔진'

▶ **학교 붕괴**

-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 교권의 추락 : '스승'이냐 '교원'이냐

▶ **성장판이 닫혀가는 사회**

- 세계최저의 출산율 :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222개국 중 217위
- 급격한 고령화 : 2060년에는 인구 중 절반이 노인과 어린이라고 함
- 세계최고 수준의 자살률 : 이 추세로 가면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대다수 OECD국가는 자살률이 30%이상 감소했으나 한국은 오히려 153% 증가
  *대학 휴학생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함

▶ **다문화 사회의 빠른 진행**

- 다문화 가정 출신 자녀들이 언어, 피부색이나 문화 차이 등으로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비행 문제에 있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수도 있다.
- [별지1] 2012년 5월 8일자 조선일보 기사 '동남아계 자녀 올해부터 본격 입학' 참조

2. 우리 아이들의 모습

▶ **꿈을 꿀 시간조차 없는 아이들**

-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아이들
- 휴대전화기, 게임기, 컴퓨터, 인터넷에 심취하는 아이들
- 피시방, 오락실, 노래방, 찜질방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 음란물에 심취하는 아이들
-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 자살이나 자해를 하는 아이들
- 음주와 흡연을 하는 아이들
- 문신을 하는 아이들
- 왕따와 폭력을 저지르는 아이들 : 인터넷 왕따카페 급증
- 학교 내에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아이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위를 부정하는 아이들
- 익명성에 편승하는 아이들 : '악플'

▶ **비행으로 치닫는 아이들**

Ⅱ. 청소년비행의 유형 : '학교폭력'과 '좁은 의미의 청소년비행'

1. 청소년비행의 분류

▶ **학교폭력 : 언어폭력 〉 따돌림 〉 폭력, 상해 〉 공갈**

- **1유형 학교폭력 : 언어폭력, 따돌림(왕따)**
- **2유형 학교폭력 : 폭력, 상해, 공갈, 강요, 성폭행**

▶ **좁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

- **3유형 청소년비행 : 학생이 저지르는 절도, 강도, 약물남용 등의 비행**
- **4유형 청소년비행 : 학업중도이탈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

2. 학교폭력의 개념 등

가. 개념과 유형

▶ **개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제2조

  * 제1호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 제2조 제1의2호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학폭법 제2조 제1의3호 :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한다.

▶ **유형**

- 언어폭력, 따돌림(왕따) : 1유형 학교폭력
- 언어폭력, 따돌림을 제외한 폭행, 상해, 공갈, 강요, 성폭행 : 2유형 학교폭력

나. 학교폭력의 당사자, 발생장소, 피해내용

- 당사자
  * 가해자 : 학생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
  * 피해자 : 반드시 학생
- 발생장소
  * '학교 내 폭력'과 '학교 밖 폭력'
  * '동창간폭력'과 '비동창간폭력(또는 학교주변폭력)' :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
- 피해내용 :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3. 좁은 의미의 청소년비행의 의의

- 청소년비행 중 학교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저지르는 절도, 강도, 오토바이 등 무면허운전, 약물오남용 등의 비행 : 3유형 청소년비행
- '학업중도이탈청소년'이 학생이나 일반 사회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절도, 강도, 폭력, 성폭행 등의 비행 : 4유형 청소년비행

4. 학교폭력과 좁은 의미의 청소년비행의 특성 비교

	학교폭력	좁은 의미의 청소년비행
가해자의 가정환경	결손가정의 비율이 크게 높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저소득층 출신 가정에 치우쳐 있지 않다.	결손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 출신 소년의 비율이 매우 높다.
가해자의 학업현황	-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많다. - 1유형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학교성적과의 상관성이 낮다. - 2유형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 학교를 중도포기한 경우가 많다. - 학교를 다니더라도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자의 연령대	초등학생(주로 고학년)에서 고등학생까지 분포하나, 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 비율이 매우 높다.	중, 고등학생이 대부분이나, 최근 연령대가 서서히 낮아져가고 있다.
비행내용	폭력, 상해, 공갈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절도, 강도, 사기, 오토바이무면허 운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성폭행도 있다.
피해의 성격과 내용	- 지속적, 관계적 피해 - 금전적 피해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중점적으로 부각	- 1회적, 무관계적 피해 - 금전적 피해가 주된 내용

Ⅲ. 학교폭력의 이해

1. 학교폭력의 유형

가. 집단형과 개인형

▶ **일진형, 왕따형, 집단유희형**

▶ **진정일진형과 아류일진형**

나. 비행형과 인성형

다. 성폭력과 그 밖의 폭력

- 남녀공학의 학교나 기숙형 학교에서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의 발생비율이 일반 학교 보다 높음
-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2007년 298건, 2009년 381건, 2010년 575건으로 3년 만에 1.9배 증가하였음

2. 학교폭력의 특성

▶ 관계성

▶ 지속성

▶ 공연성

3.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은 상존
- 1995년 6월 15일 김대현군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하였고, 그 이후 김대현군의 아버지 김종기 씨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을 설립함

▶ 폭력의 비인격성

▶ 폭력의 집단성

- 가해자측에서 본 폭력의 집단성 문제 : '악마에쿠우스사건', '채선당사건'
- 피해자측에서 본 폭력의 집단성 문제

▶ 폭력의 일반화

▶ 피해자의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대응방식

4. 학교폭력 문제의 본질

▶ 청소년의 인성 문제

▶ 청소년의 정신심리상태 문제

- 가해자들의 정신심리상태
-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

Ⅳ. 비행청소년들의 상태와 사회환경

1. 비행청소년들의 상태

가. 신체적·정신적 상태

▶ **병들어 있다.**

▶ **성격적·행동적 장애가 많다.**

▶ **관계능력이 부족하다.**

나. 학업 상태 등 - 상습적 가출, 학업 중단

- 2011년 통계에 따르면 14세에서 19세의 청소년 중 가출 ·중퇴 청소년 수는 전국적으로 7만 명에 달하고, 그 중 학업 중퇴 청소년 수는 전국적으로 약 6만 명에 달한다고 함
-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가출청소년 수가 20만 명에 이른다고 함

다. 가정 환경 - 결손가정 및 저소득 ·빈곤층의 가정

전체 보호소년 가정현황(창원지방법원)

기간 : 2010년 3월 8일 - 2011년 3월 7일

분류	보호소년수(명)	비율(%)
결손가정	660	46.54
비결손가정	758	53.46
합계	1,418	100

재비행 보호소년 가정현황(창원지방법원)

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분류	재비행보호소년수(명)	비율(%)
결손가정	540	56.78
비결손가정	411	43.22
합계	951	100

2. 비행청소년들을 둘러싼 사회환경 - 유해하다.

- 기본이 무시되는 사회
- 술을 권하는 사회
- 폭력이 묵인 내지 미화되는 사회
- 성문화가 왜곡된 사회

Ⅴ. 청소년비행의 예방

1. 소년법의 이념 - '소년의 건전한 육성'

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의 의미

-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다시 말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함
-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란 '소년을 비행(또는 범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조적(自助的)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임

나.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전제

▶ **'관용'과 '용서'**

- '실정법'과 '법을 넘는 법'
- 실정법 중 예외적으로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소년법'이다.

▶ **소년을 절차의 객체나 대상이 아니라 목적 내지 주인공으로 대우**

▶ **환경의 조성**

- 비행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환경이 그들의 특성에 맞게 갖추어져야 함
- 청소년, 특히 비행소년과 관계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빈약하기 짝이 없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도 매우 커서 지방에 대한 차별로 느껴질 정도임

▶ **사법과 행정의 공조**

- 사법부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
- 소년보호재판 제도는 '사법과 복지가 만나는 경계선'에 위치해 있음
- 소년보호재판절차에 있어서 절차의 주인공인 보호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법과 행정,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의 공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2. 청소년비행의 예방

가. 비행예방을 위한 처우 선택에 있어 고려 사항

(1) '처우'의 의미

- 소년부판사는 보호사건이 송치되면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리불개시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개시결정'을 함
- 심리가 개시된 이후에는 '불처분'과 '보호처분'을 한다. 불처분은 법정에서 심리를 열었으나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임
- 이상의 심리불개시결정, 심리개시결정 이후의 불처분과 보호처분을 모두 합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라고 함
- 보호처분 중 6호에서 10호까지는 격리시설인 소년보호시설(복지시설), 의료보호시설(일명 의료소년원), 소년원에 위탁된다고 하여 '시설 내 처우'라고 하고, 나머지 1호에서 5호까지는 '사회 내 처우'라고 함.
- 사회 내 처우의 핵심은 1호처분, 즉 보호소년을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이고, 나머지 2호 내지 5호처분은 보호소년의 재비행 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할 수 있음
-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의 원칙적 차이는 소년이 사회로 복귀하여 자유를 누리느냐 그렇지 않고 격리되어 자유를 제약 당하느냐에 있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보호소년들은 시설 내 처우를 매우 꺼림

(2) '처우' 선택에 있어 고려 사항

- 비행과 관련한 사항 : 비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모두 고려
- 소년과 관련한 사항 : 내적 상태와 외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 피해자에 관한 사항 : 피해변상, 사죄와 용서 등을 고려

나. 처우 선택을 통해 달성해야 할 1차적 목표 - '재비행의 예방'

- 2004년 이후 2009년까지 소년범죄가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고, 이는 성인범죄증가율 6%의 약 2배에 해당함
- 특히, 2008년 이후 전체 소년범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소년의 재비행률(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함

다. 재비행의 예방을 위한 실천원리 - '치유·회복', 동기부여, '지속적 관리'

(1) 치유 및 회복

- 비행의 예방에 있어서는 '치유'가 우선
-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회복도 이루어져야 함

- 소년의 치유와 회복에는 ‘가정’만한 것이 없음
- 조기개입, 자율성보장, 개별적 치유

(2) 동기부여
- 직업교육 등

(3) 지속적 관리

Ⅵ. 청소년회복센터에 관하여

1. 청소년회복센터의 의의, 필요성, 제도적 근거

가. 청소년회복센터의 의의와 필요성

▶ **청소년회복센터의 의의**
-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여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호소년’들을 부모와 가족을 대신하여 보살피고 훈육하는 역할을 하는 곳
- 가정위탁을 통해 비행소년의 정신심리상태와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도모
-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 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의제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생활가정’
- 혈연관계가 없이 가정과 유사한 관계가 형성되므로 ‘대안 가정’
- 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의제된 공동생활가정이 형성되므로 ‘사법형 그룹홈’이라고 함
- 보호소년의 처벌보다는 소년법의 목적인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주안점을 둔 비행청소년 전용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

▶ **청소년회복센터의 필요성**
- 폐쇄적 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소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
- 집단적 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별적으로 소년들을 보호해 줄 장치
- 부모와 가족을 대신하여 24시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장치

나. 청소년회복센터의 제도적 근거
- 소년위탁보호위원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
- ‘신병불인수(身柄不引受) 소년위탁보호위원’과 신병인수(身柄引受) 소년위탁보호위원’
-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자들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는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보호소년들을 위탁받음

2. 청소년회복센터의 설립과 현황

- 현재까지 경상남도에 다섯 곳, 부산에 여섯 곳 총 열 곳
- http://mansaboy.com, http://cafe.daum.net/mansaboy

3. 청소년회복센터의 기능과 운영상 중점 사항

▶ 청소년회복센터의 기능

- 대리부모와 가족으로서의 역할
- 상담자 및 상처치유자
- 사회화의 장 : 관계능력의 함양
- 비행의 확산 예방 : 소방로 역할
- 봉사의 장

▶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상 중점 사항 : 가정과 유사한 공동체의 회복

4. 청소년회복센터에 관한 전망

▶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샬롬청소년센터의 통계

-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위탁기간을 만료하였거나 기간 만료 전 이탈한 소년은 총 27명, 이 중 재비행을 한 소년은 5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5%에 불과함
- 기간 만료 전 이탈한 소년은 총 6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2%이고. 이들 중 2명이 재비행을 하였고, 그 비율은 33.3%임
- 6개월의 위탁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친 소년은 21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7.8%인데, 이들 중 3명이 재비행을 하였고, 그 비율은 14.9%임

▶ 청소년회복센터와 위탁가정제도

▶ 청소년회복센터의 제도적 수용을 바라며

[별지 1]

2012. 5. 8. 제28413호 조선일보

동남아계 자녀, 올해부터 본격 입학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대거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피부색 차이가 있는 동남아 출신 엄마의 자녀 가운데 성장해서 현재 군 복무 중인 사람도 일부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이 지역들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 수천명씩 취학연령대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결혼이주자 자녀 중 초등학교에 입학연령(7세)이 되는 어린이는 지난해 1700명에서 올해 2250명으로 32% 늘었다.

5년 뒤에는 9000명대로 껑충 뛴다. 특히 베트남계 자녀는 작년 436명에서 올해 909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내년에는 1513명, 2014년 2825명, 2015년 5673명, 2016년 6129명 등으로 매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계 자녀는 지난해까지는 900명대에 머물다가 올해부터 1000명대로 늘어난다.

동남아 출신 자녀들이 급증한 것은 2004년부터 동남아 출신과의 국제결혼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조선족(중국) 출신과의 결혼이 많았다. 1990년대부터 한국에 시집온 조선족 출신 엄마의 자녀는 연간 취학연령이 2000명대에서 맴돌고 있으며, 일본계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원은 "현재 취학연령대 아동은 중국 조선족 자녀가 가장 많지만 3년 뒤부터는 베트남계가 중국 조선족을 앞지른다"며 "아들이 피부색이나 문화 차이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조선족 출신과 달리, 한국말이 서투른 동남아 출

피부색 다른 입학연령 학생
지난해보다 32% 더 늘어나

베트남계 자녀들 입학 숫자는
매년 갑절씩 오를 것으로 추산

신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한국어 습득이 늦은 편이다. 저소득 가정이 많아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학력 부진 등이 우려된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많이 재학 중인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학습부진아 51명 중 42명(82%)이 다문화가정 자녀였다. 동남아 출신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dskim@chosun.com

급증하는 베트남 등 동남아 출신 가정 자녀 (단위: 명) 자료: 행정안전부

	다문화 가정 자녀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1세	1만6428	2080	6231	1416	926
2세	1만7304	2235	6717	1481	770
3세	1만6607	2424	6129	1296	1002
4세	1만5584	2820	5673	1133	267
5세	1만775	2243	2825	1091	87
6세	8844	2113	1513	1003	55
7세(취학연령)	7995	2131	909	1046	21
8세	6710	1901	436	997	24
9세	6393	1830	264	945	26
13세	5712	1936	353	339	42
19세	1662	581	334	81	40

[별지 2]

아버지 손찌검 때문에 …
한국 소녀 영국서 기구한 처지

〈10세〉

툭하면 때리는 아버지는 곧 추방되는데, 영국은 "딸 위험해 같이 못 보낸다"며 그네들이 키우겠답니다
아버지 동거녀와 한국의 친엄마는 양육을 포기했고, 소녀는 때리지만 않으면 아버지와 살겠답니다

아버지에게 학대 받은 최양의 운명은

아버지 최씨
가정폭력 혐의로 복역, 추방 예정
"생이별 안 된다. 딸과 함께 갈 것"

영국 영주권자 동거녀 A씨
최씨가 자신의 아들도 상습 폭행
"최양 못 키운다" 양육 거부

전 부인 B씨
최씨와 이혼한 최양 생모
"전남편 딸 못 키운다" 양육 거부

영국 정부
보호 대책 없인 못 보낸다
"영국에서 난민으로 키우겠다"

한국 보건복지부
"한국 보호시설에서 키우겠다"

한국 보낼지 말지
법원 내달 5일 결정

한국에서 태어나 줄곧 한국에서 성장해온 최모(10)양. 넉 달째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한 영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초등학교를 다니는 중이다. 친부·친모가 있지만 최양은 사고무친(四顧無親)의 영국 땅에서 혼자 자라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다. 최양을 보호하고 있는 영국 지방정부가 한국인 아버지의 양육권을 박탈했고, 한국에 있는 생모는 딸 키우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양의 기구한 운명은 지난 5월 아버지 최모(44·무직)씨가 영국 경찰에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최씨는 올해 초 한국에서 만난 영국 거주 한국인 A씨와 함께 살기 위해 관광비자로 영국에 입국했다. 최양도 데리고 갔다. 최씨 부녀는 A씨와 그의 네 살배기 아들과 한 가정을 이뤘다. 인근 한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함께 교회를 다니는 등 평온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다 경찰이 들이닥쳤다. 자신과 아들에게 최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다는 A씨의 신고가 있었다.

최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최씨와 관련된 모든 것이 악몽"이라며 곧바로 최양 양육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최양은 관할 구청을 통해 영국인 가정에 위탁됐다.

아버지 최씨는 이달 초 석방됐다. 영국에서는 교도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기의 반만 수감된다. 이어 영국 내무부는 최씨와 최양을 한국으로 추방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입국 목적을 관광이라고 속인 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최양을 보호하고 있는 관할 구청의 사회복지사가 최양을 한국에 보내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최씨가 경찰 조사에서 친딸도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유럽연합(EU)의 아동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최씨만 한국으로 추방하고 최양은 영국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최씨는 "영국이 내 딸을 빼앗으려 한다"며 주영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청했다. 대사관은 우선 최양을 대신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봤다. 조부모는 모두 세상을 뗐고, 최양의 생모는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결국 한국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정책과)가 "최양이 한국에 오면 보호시설에 맡기고, 부친의 폭행 정도를 조사한 뒤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아버지의 접근 금지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영국 측에 전달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최양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대책을 미덥게 여기지 않고 있다. 최씨가 딸을 데려다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글래스고 법원에서는 다음 달 5일 최양을 한국으로 보낼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가 열린다. 대사관에 따르면 최양은 "아버지가 때리지만 않는다면 아버지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런던=이상언 특파원
joonny@joongang.co.kr